

연구기금관리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예원예술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교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연구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관리기관) 연구기금의 관리는 행정지원처를 관리기관으로 한다.

제3조(회계) ① 연구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본 대학교의 세입·세출 예산에 관한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.

② 연구기금은 금융기관의 별도계좌에 예치하여 행정지원팀에서 관리하고, 관리기관의 연구기금 집행 계획에 따라 집행한다.

제4조(과실) 연구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 및 기타 수입은 제3조 제2항의 계좌를 적립한다.

제5조(사용) 연구기금은 일정기간 적립한 후 연구기금 적립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을 교내연구비 심의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사용한다.

1. 자체 연구비
2. 연구시설 유지 및 보수 경비
3. 연구활동 지원인력의 인건비
4. 학술 및 연구 활동지원
5. 연구진흥 및 연구지원에 필요한 경비
6. 기타 학술연구 및 연구활동의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

제6조(세칙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(2000. 3. 2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1. 1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3. 10. 6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9. 2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